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6.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6월 2일

나. 발 의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5년 6월 9일

라. 상정일자: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 1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정책대상에서 소외된 골목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소상공인 운영 점포 밀집기준 완화(안 제2조)
- 지정에 대한 상인 동의요건 완화 및 지정절차 근거 신설(안 제3조)
- 지정취소 요건 구체화 및 지정취소 절차 근거 신설(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기준을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으로 규정 후, 단서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 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우리 구(區) 현행 조례에서는 상위법과 동일하게 지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었음. 2023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제도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조례협의를안」을 마련하였으며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협의 요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지정 요건 완화를 통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는 움직임이 있음.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배경하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의 밀집 기준 및 신청 동의 요건 완화,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의 명문화를 통해 우리 구(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제출됨.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밀집기준(30개 이상 → 25개 이상)과 신청 동의 요건(1년 이상 영업 → 상시 영업)을 각각 완화하는 것과 지정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안 제5조에서는 지정 취소 요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하는 주체를 추가하여 취소 요건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지정 취소 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검토 결과

- 2023년도의 중소벤처기업부의 조례 협의(안)에 따르면 용도지역을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밀집 기준 완화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표준안으로 하였으나,
- 2024년도에는 「전통시장법」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 예정('25.6. 현재 미개정)이므로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밀집기준을 완화해 협의 요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고 한 바,
- 2025년 3월 우리 구(區)에서는 용도지역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25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마쳤으므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조례협의를안」 및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지방자치단체 자율 지정 알림」에 따라 우리 구(區) 여건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써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더불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며, 지정 취소 처분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 바,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제2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도 취소 시 청문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도 청문 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짐.

- 또한 그동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지 못하여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자생력을 향상하는 등 골목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534 호
----------	---------

제출연월일: 2025. 6.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정책대상에서 소외된 골목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운영 점포 밀집기준 완화(안 제2조)

나. 지정에 대한 상인 동의요건 완화 및 지정절차 근거 신설(안 제3조)

다. 지정취소 요건 구체화 및 지정취소 절차 근거 신설(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협의(구 ↔ 중기부): 협의완료('25.3.)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인권영향평가: 대안어 제시('보좌하고' → '도와 일을 처리하고') 수용

4)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라. 입법예고('25. 4. 24. ~ 5. 14./ 20일간)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30개”를 “25개”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 여건과 상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다.

제3조의 제목 “(신청 절차)”를 “(지정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1년 이상”을 “상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상점가 명칭, 대표(관리자), 소재지의 각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영업**”을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영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상점가 명칭, 대표(관리자), 소재지, 지정취소 근거 및 사유의 각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제2항 중 “**보좌하고**”를 “**도와 일을 처리하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상점가 개요	골목형상점가 명칭			상인대표		
	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규모	토지 면적: m ² , 건물 연면적: m ² , 영업장 면적: m ² , 점포 수: 개				
	구역 상세	주 소		면적(m ²)	점포 수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설립일		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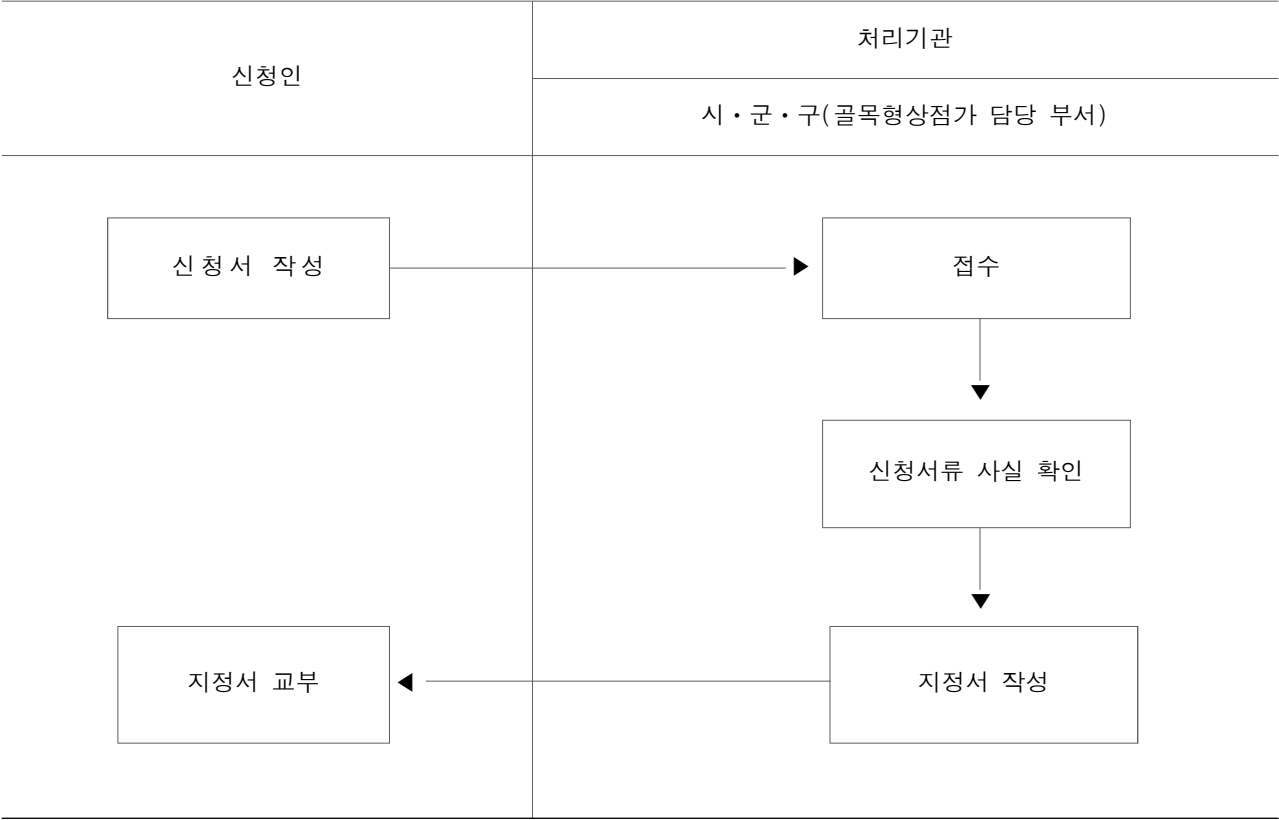
영등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m²]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상 점 가 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면적/점포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지정) ① (생략)	제2조(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 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u>30개</u>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일 것 <u><단서 신설></u>	1.----- ----- ----- <u>25개</u> ----- --. <u>다만, 지역 여건과 상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다.</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신청 절차)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u>다음</u>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 신청 등) ① ----- ----- ---- <u>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u> ----- -----.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u>1년 이상</u>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1. ----- <u>상시</u> ----- -----
2. 3. 삭제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제5조(지정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2. (생략)

3.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신 설>

②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상점가 명칭, 대표(관리자), 소재지의 각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지정 취소)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영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u><신 설></u>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 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에는 <u>상점가 명칭, 대표(관리 자), 소재지, 지정취소 근거 및 사유의 각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u>
<u><신 설></u>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u>보좌하 고</u>,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③ (생 략)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 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u>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에게 알려야 한다.</u>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u>도와</u> <u>일을 처리하고</u>, ----- ----- ----- --. ③ (현행과 같음)